

#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건물 등의 매매·임대 등으로 급수 사용자가 변경되었을 때

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.

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월 1만원 범위내에서 감면하고, 체납한 요금은 감면에서 제외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27조, 제37조,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수도행정과장 이 규 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요금담당 노 성 우
	담당자 (전화번호)	박 순 덕 (3676)

[별표2]

## 업종별 요율 표(제26조 관련)

(단위:m<sup>3</sup>, 원)

업종별 구분	종량요금		비고
	사용량	요금	
가정용	0 ~ 20	310	
	21 ~ 40	470	
	41 이상	700	
일반용	0 ~ 50	520	
	51 ~ 100	630	
	101 ~ 300	700	
	301 ~ 1000	800	
	1001 이상	850	
대중탕용	0 ~ 1000	500	
	1001 ~ 1500	600	
	1501 ~ 2000	680	
	2001 이상	720	
전용 공업용	톤당	310	

[별표3]

## 업 종 의 구 분 표 (제27조 제1항 관련)

업 종	구 분 내 용
가 정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</li> <li>○ 양로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함)</li> <li>○ 아동양육시설(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함)</li> <li>○ 기숙사</li> </ul>
일 반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[단, 제빙업, 냉동업, 냉장업, 청량음료제조업, 식품가공제조업, 양조업(주정제조업), 벽돌제조업, 의약품제조업, 화공약품제조업, 화장품제조업의 101세제급미터 이상은 3단계 요금적용]</li> </ul>
대 중 탕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목욕장업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상의 목욕장업)</li> <li>○ 호텔 내 목욕장업(호텔과 별도의 급수관 사용시).</li> </ul>
전용 공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도의 배·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</li> </ul>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신고)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  <u>〈신 설〉</u></p> <p>②(생 략)</p> <p>제27조(업종의 구분) ① ~ ②(생략)</p> <p>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(또는업무용)과 1가구이상의 가족당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1. 월 사용량이 영업용(또는 업무용)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 (이하 “가정용 가구당”이라 한다) <math>15\text{m}^3</math>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<math>15\text{m}^3</math>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(또는 업무용) 사용량으로 한다. 다만, 잔여량이 영업용(또는 업무용)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(또는 업무용)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.</p> <p>2. 월 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<math>15\text{m}^3</math>을 합산한 양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가정용만을 적용 한다.</p> <p>제37조(요금등의 감면) ① ~ ⑥(생략)  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18조(신고) ①-----  ----- 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건물등의 매매·임대 등으로 급수사용자가 변경 되었을 때 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업종의 구분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.</p> <p>제37조(요금등의 감면) ① ~ ⑥(현행과 같음)</p> <p>⑦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월 1만원 범위내에서 감면하고, 체납한 요금은 감면에서 제외한다.</p>

현 행			개 정 안					
<별표2> 업종별 요율표(제26조 관련) (단위:m <sup>3</sup> , 원/1m <sup>3</sup> )			[별표2] 업종별 요율표(제26조 관련) (단위:m <sup>3</sup> , 원)					
구분 업종별	종 량 요 금		비고	구분 업종별	종 량 요 금		비고	
	사용량	요금			사용량	요금		
가정용	0~20	290		가정용	0~20	310		
	21~30	430			21~40	470		
	31~40	600			41이상	700		
	41이상	700			0~50	520		
업무용	0~20	460		일반용	51~100	630		
	21~50	520			101~300	700		
	51~100	580			301~1000	800		
	101~300	680			1001이상	850		
	301이상	760			0~1000	500		
영업용	0~30	510		대중탕용	1001~1500	600		
	31~50	610			1501~2000	680		
	51~100	760			2001이상	720		
	101이상	900			전용공업용	톤당	310	
대중탕용	0~1000	460						
	1001~1500	570						
	1501~2000	640						
	2001이상	680						
전용공업용	톤당	290						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3] 업종의 구분표(제27조제1항 관련)		[별표3] 업종의 구분표(제27조제1항 관련)	
업 종 별	구 분 내 용	업 종 별	구 분 내 용
가 정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. 단,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1단계요율 적용</li> <li>○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</li> <li>○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 으로서 10㎡미만의 소규모가게</li> <li>○ 양로시설, 기숙사</li> </ul>	가 정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</li> <li>○ 양로시설(「노인복지법」 제 32조 제1항제1호에 의함)</li> <li>○ 아동양육시설(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함)</li> <li>○ 기숙사</li> </ul>
업 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</li> <li>○ 사설소화전, 관공서, 병영, 학교</li> <li>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%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및 단체(생산, 제조용수 제외)</li> <li>○ 종교단체, 방송국, 신문사, 정당, 국가유공단체, 사회단체(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), 새마을금고, 농·수·축협중앙회 및 지사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</li> </ul>	일 반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[단, 제빙업, 냉동업, 냉장업, 청량음료제조업, 식품가공제조업, 양조업(주정제조업), 벽돌제조업, 의약품제조업, 화공약품제조업, 화장품제조업의 101세제곱미터 이상은 3단계 요금 적용]</li> </ul>
영 업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접객업(대중음식점, 유홍음식점, 전문음식점, 다방, 제과점 휴게실 등)</li> <li>○ 공연장, 유기장, 노래방, 숙박업(여인숙 제외), 오락장, PC방, 비디오 대여점, 짐질방</li> <li>○ 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, 소매점(10㎡ 이상)</li> <li>○ 자동차판매정비업(겸 사장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, 운송 또는 관광업, 가스충전소</li> </ul>		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3] 업종의 구분표(제27조제1항 관련)		[별표3] 업종의 구분표(제27조제1항 관련)	
업종별	구 분 내 용	업종별	구 분 내 용
영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식장, 사설학원, 사진현상소, 도축장, 이발소, 미장원</li> <li>○ 제빙업, 냉동업, 냉장업, 청량 음료제조업, 식품가공제조업, 양조업(주정제조업), 벽돌제조업</li> <li>○ 의약품제조업, 화공약품제조업, 화장품제조업(단, 31m<sup>3</sup> 이상은 2 단계 요금 적용)</li> <li>○ 금융기관(새마을금고 제외)</li> <li>○ 체육시설업(체육도장, 탁구장 제외)</li> <li>○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: 건축물 준공 검사전까지)</li> <li>○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</li> <li>○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(최종단계 요율)</li> <li>○ 안마시술소, 한증막, 호텔 내 사우나시설</li> <li>○ 기타 시장이 정하는 업태</li> </ul>	일반용	
대중탕용	일반목욕장업(공통탕업, 가족탕업)	대중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목욕장업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상의 목욕장업)</li> <li>○ 호텔 내 목욕장업(호텔과 별도의 급수관 사용시)</li> </ul>
전용공업용	(생략)	전용공업용	(현행과 같음)